

21.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폐지령

대통령령 제15,972호 1998. 12. 31

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.
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②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③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4호·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9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“양도소득세·토지초과이득세”를 각각 “양도소득세”로 하고,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.

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중 “증여세·토지초과이득세”를 “증여세”로 한다.

주택회보